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도심항공교통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8,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됨에 따라 버티포트의 시설 구분,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및 현황조사,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버티포트를 구성하는 시설을 기본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추가로 기본시설을 필수시설과 부가시설로 구분함(안 제2조)
- 나.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법 제4조에서 제시한 사항 외 추가되어야 할 사항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실증사업자의 장비·인력 등 지정기준을 별표 1에 규정함(안 제7조)
- 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
- 사. 버티포트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 형태를 구분. 또한, 버티포트 지정을 위해 필요한 유형 및 등급을 별표 2에 규정함(안 제10조)
- 아.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자.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별표 3에 규정함(안 제12조)
- 차.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수준을 규정하되, 공유재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카. 규제신속확인에 필요한 절차 및 제출서류를 규정함(안 제15조)

타.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파.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의무보험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하.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 (안 제19조~제21조)

거.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기관을 정함(안 제22조)

너. 준공확인증명서 받기 전 버티포트 사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4에 규정함(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

다. 합 의 : 정부부처, 지자체 의견조회 실시(20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제정안 전문

2) 입법예고(.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버티포트 구성 시설의 종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본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필수시설: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여객 및 화물의 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

나. 부가시설: 필수시설 외에 도심형항공기의 지상이동, 충전, 정비 등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여객 및 화물의 처리를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2.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지원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지원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시범운용구역에서의 업무)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도심형항공기를 활용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2. 관광비행
3. 수색·구조
4. 의료·응급후송
5. 교육훈련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2. 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3.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정책·제도·기술·산업 동향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2.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변경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사대상

2. 조사일시

3. 조사방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간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한 문헌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현황조사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항공교통 보급 및 서비스 현황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인력·고용·시장 규모 및 전망

3.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매출 현황 및 수송 실적

4.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 개발 동향

5.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이용자 특성 및 만족도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시험 등의 목적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실증사업구역 내 인명·재산 등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

3. 그 밖에 입지 및 공역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시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2. 실증사업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실증사업이 종료된 경우
4. 그 밖에 실증사업구역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제7조(실증사업자의 지정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비·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한 시범운용구역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의견수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한 시범운용구역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의견수렴

3.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

가.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14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

나. 제출된 의견을 운영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등이 제출한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운용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시범운용구역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운용구역 내 인명·재산 등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시범운용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20조에 따른 운영평가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출입검사 결과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등 시범운용구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신청하여 지정받은 시범운용구역에 대하여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범운용구역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개발사업시행 인가 변경) 법 제9조제7항에서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2. 자금조달계획
3. 개발사업 시행기간

제10조(버티포트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버티포트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실증사업구역 내에 구축된 도심항공교통 관련 시설 중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버티포트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시설

2.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 하였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수립한 개발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버티포트

3. 「공항시설법」 제2조에 따른 비행장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 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비행장

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만족할 것.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버티포트 설계기준을 만족할 것

② 버티포트의 명칭, 분류, 번호, 위치, 경유 회랑과 그 밖에 버티포트 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분하여 지정·고시하는 버티포 트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회 랑을 순항구간과 입출항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심항공교통회랑의 번호, 명칭, 기점 및 종점과 그 밖에 회랑의 지 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해당 국공유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등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받으려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또는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받으려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또는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⑥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또는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국유재산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2. 공유재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나 분할납부

⑦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수익허가, 대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갱신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시범운용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참조하여 구축·갱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심항공교통 운항·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로상 또는 버티포트 주변의 장애물이 신규 설치·변경된 경우

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운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이 설치·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갱신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규제신속확인 신청 등) ① 시범운용을 하려는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도심항공교통사업 사업계획서 또는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2.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3.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기 위해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시범운용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달성도
2. 교통환경 개선,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도심항공교통사업으로 인한 시범운용구역 및 주변 지역 파급 효과
3. 안전사고, 민원 등 발생에 대한 대응 현황 및 개선 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 권고사항을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의 6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세부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작성 항목, 작성 방식 예시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보험 가입 의무) ①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가.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라.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2. 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4. 보험기간 만료일은 연구·시범운용 만료일 이후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보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이에 준하는 계획으로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계획에서 제시하는 도심항공교통 지원 정책 방향, 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법 제5조에 따른 산업현황 조사 결과에 기반한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당위성

3. 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에서의 성과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평가 결과

제19조(연구개발사업) 법 제23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법인

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8.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0.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11.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제2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2. 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소요되는 기술적·행정적·법률적 검토
3. 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위한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시 기술적·행정적·법률적 검토
4. 법 제7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의 접수, 검토, 통보 및 관리
5. 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소요되는 기술적·행정적·법률적 검토
6. 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시 기술적·행정적·법률적 검토
7. 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신청에 관한 접수, 검토 및 관리
8.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접수, 검토 및 관리

9.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소요되는 기술적·행정적·법률적 검토
10.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시 기술적·행정적·법률적 검토
11.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위한 검토 및 관리
12.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 준공확인을 위한 신청의 접수, 검토 및 관리
13.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위한 기술적·행정적·법률적 검토
14. 법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 지정을 위한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시 기술적·행정적·법률적 검토
15. 법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소요되는 기술적·행정적·법률적 검토
16. 법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을 위한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시 기술적·행정적·법률적 검토
17. 법 제14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의 접수, 검토, 통보 및 관리
18.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 증명, 승인, 허가, 지정, 임

명, 심사 명령 및 취소 등을 위한 접수, 검토, 검사, 시험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19.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에서 규제 적용을 위한 국가
교통위원회 심의 시 기술적·행정적·법률적 검토

20. 법 제16조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 증명, 승인, 허가, 지정,
임명, 심사 명령 및 취소 등을 위한 접수, 검토, 검사, 시험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2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 적용을 위한 국가
교통위원회 심의 시 기술적·행정적·법률적 검토

22. 법 제17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 관리 및 도심
항공교통정보를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3. 법 제18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운영, 관리, 도심
항공교통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도심항공교통공간
정보 갱신 통보의 접수 및 관리

25. 법 제19조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신청의 접수, 통보, 검토 및 관리

26. 법 제20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으로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포함한다)의 기술적·행정적·법률적 검
토

27.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의 접수,

검토, 통보 및 관리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도심항공교통 관련 법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도심항공교통 업무 관련성(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실증사업자 장비·인력 기준(제7조 관련)

분야	장비기준	인력기준
1. 항공기/ 운항자	도심형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체, 전산장비 등의 장비 중 어느 하나를 보유할 것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보유 도심형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종사 나. 보유 도심형항공기에 대한 정비가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비사
2. 교통관리	도심항공교통 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통신장비, 관제장비 등의 장비 중 어느 하나를 보유할 것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그에 준하는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버티포트 운영·관리	버티포트운영·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통신장비 등의 장비 중 어느 하나를 보유할 것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을 이수한 버티포트 보안검색 감독 가능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그에 준하는 기술을 보유한 자 나. 국토교통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교관 또는 이수자

비고

1. 장비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여러 분야를 조합하여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는 각 분야의 장비·인력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버티포트의 구분(제10조 관련)

1. 유형에 따른 분류

- 가. 육상버티포트
- 나. 옥상버티포트
- 다. 수상버티포트
- 라. 선상버티포트
- 마. 해상구조물버티포트

2. 시설에 따른 분류

- 가. 1등급: 필수시설 및 부가시설을 모두 갖춘 버티포트
- 나. 2등급: 3등급 시설을 갖추고, 부가시설 중 정비시설을 갖춘 버티포트
- 다. 3등급: 4등급 시설을 갖추고, 부가시설 중 유도로·계류장, 충전시설을 갖춘 버티포트
- 라. 4등급: 필수시설만 갖춘 버티포트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기준(제12조 관련)

구분	기준
도심항공교통운 송사업자 도심형항공기 사용사업자	가. 도심형항공기 1대 이상 보유 나. 기술인력 1) 보유 도심형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종사 1명 이상 2) 보유 도심형항공기에 대한 정비가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비사 1명 이상 다.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 가입
도심항공교통 관리사업자	가. 도심항공교통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통신장비, 관제장비 등을 갖춘 사무실 또는 사업장 나. 기술인력 1)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그에 준하는 기술을 보유한 자 1명 이상 다.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 가입
버티포트 운영·관리 사업자	가. 버티포트운영·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춘 사무실 또는 사업장 나. 기술인력 1)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을 이수한 버티포트 보안 검색 감독 가능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그에 준하는 기술을 보유한 자 1명 이상 2) 국토교통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교관 또는 이수자 1명 이상 다.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 가입

비고

1. “보유”의 경우 도심형항공기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도심형항공기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2. “도심형항공기”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및 감항증명을 받은 기체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규제특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 신청 시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인증 계획으로 같음하고 사업개시 예정일 전까지 형식증명 및 감항증명을 받아야 한다.

3. “사무실 또는 사업장”은 보유 또는 임대 계획, 장비 도입 등을 포함한 구축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개시 예정일 전까지 구축 계획에 따른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4. “보험 가입”의 경우 보험에 가입할 예정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개시 예정일 전까지 보험가입 신고서 등 보험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3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법 제9조제1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 명서를 받기 전에 버티포트를 사용하 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 포트를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300	400	500
---	-----------	-----	-----	-----